고구려의 형벌제도와 그 특징

최성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정일선집》제2권 증보판 35폐지)

고구려의 형벌제도와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봉건국가로 서 성립후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고 사회 제도의 모든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한 고 구려의 정치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함께 고구려국가가 존재한 이전시기의 국가들과 그 이후시기 에 존재한 국가들의 형벌제도연구에서도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구려에서는 그 이전시기에 비해볼 때 많은 형벌들이 실시되었는데 그것을 보면 최고형벌인 사형을 비롯하여 귀양형, 화형, 곤장형, 위노, 배상, 관직박탈, 족형, 추방, 가산몰수 등의 형벌이 실시되였다.

고구려시기 적용된 형벌에는 우선 최고 형인 사형이 있었다.

고구려이전시기에는 주로 사형, 위노, 배 상 등의 형벌이 실시되였다.

사형은 《범죄자》를 죽이는 형벌로서 고 구려에서 최고형벌로 실시되였다.

고구려에서 사형은 왕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거나 도모한자,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에 가붙은자,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자, 전투에서 패배한자, 적에게 투항한자, 사람을 죽인자 등 가장 엄중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되었다.

고구려에서 사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용되였는데 대체로 참형과 교형의 실시 와 그밖의 적용방법으로 갈라볼수 있다.

참형은 《죄》인을 목을 잘라 죽이는 형 벌이였으며 교형은 《죄》인을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였다. 참형과 교형은 고구려봉건국가에서 최대의 《범죄행위》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였으며 사형적용에서 주되는 집행방법이였다.

그것은 고구려에서 참형과 교형을 용서 하지 못할 《2죄》로 락인하고 《대사령》실 시에서 제외시키고있던 사실에서 잘 알수 있다.

고구려에서 대사령은 왕의 즉위와 태자의 책봉, 자연재해, 국가적인 행사 등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실시되였는데 많은 경우 참형과 교형이하 죄수들에게 적용되였다. 이것은 참형과 교형이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사형집행방법에 대하여서는 구 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그 집행장소는 대 체로 저자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 소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차대왕의 태자 추안이 도망하였다가 와서 고하기를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대왕께서 법에 준하여 죄를 결정하고 저자에서 죽여도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 신대왕 2년 정월)

우의 기록에서 태자 추안이 스스로 저 자에서 죽여도 그대로 복종하겠다고 한것 을 보면 고구려에서 사형이 보통 저자에 서 집행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구려에서 참형은 여러가지 부가형(기 본형벌에 덧붙여 적용되는 형벌)들과 함께 적용되였다.

참형에 부가형으로 적용된 형벌들은 대 체로 화형, 가산몰수 등이였다.

화형이 참형의 부가형으로 적용되는 경 우 먼저 《죄인》을 불로 지진 다음 목을 베 는 방법으로 실시되였다. 가산몰수형은 반역음모를 꾸미거나 나라를 반역한자에게 참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많이 실시되였다. 이경우 《죄인》의 일체 재산을 몰수하였다.

변좌형으로는 사형, 위노(爲奴) 등이 실시되였다. 고구려에서 사형에는 《죄인》은 물론 그 가족과 《죄인》과 련판되는 사람들에게까지 형벌을 적용하는 련좌형도 실시되였다. 사형과 관련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사형을 적용한것을 보면 고구려의 형벌제도가 매우 악독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에서는 참형과 교형밖에도 자살형, 족형, 화형 등의 사형방법이 실시되였다.

자살형은 고구려에서 왕을 비롯한 특권 신분계급에게 실시되였다. 이들에게 자살 형을 실시한것은 형벌제도에서도 봉건지 배계급의 신분적지위를 보장해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봉건국가에 서 사형은 주로 저자에서 집행되였는데 그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형집행을 보여주어 법이 엄함을 알려주자는데 있었기때문이 였다. 그런데 특권지배계급에게도 이러한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면 지배계급신분으 로서의 신분적지위를 떨어뜨리는것은 물 론 피지배계급신분들에 대한 형벌적징계 로 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고구려에서 자살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삼 국사기》의 기록들을 보면 대체로 칼을 주 어 자살하든가 스스로 목을 매는 방법으 로 집행되였다.

고구려에서는 《죄인》은 물론 그 일가친 척들을 모두 죽이는 족형*도 실시되였다. 대 체로 족형은 왕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왕을 반대하는 내란을 기도한자, 나라를 반역한 자 등 매우 엄중한자들에게 적용되였다.

> *《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 고국천 왕 13년 4월

화형은 《범죄자》의 신체를 불로 지지거 나 태워죽이는 형벌이였다. 화형은 사형의 부가형으로 많이 적용되 였으며 이런 경우 《범죄자》는 심한 고통 을 받다가 죽어야만 하였으며 결국 《죄인》 은 두벌죽음을 당하게 되였다. 화형은 대 체로 사람의 몸을 불로 지지는 방법으 로 적용되였다.

고구려에서는 이밖에도 봉건국왕이나 개 별적봉건관료들의 자의에 의하여 사람을 구 뎅이에 던져죽이거나 활로 쏘아죽이는 여 러가지 사형방법들도 실시되였다. 이러한 사형방법들은 봉건통치배들의 개인적기분 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여 실시된것으 로서 고구려봉건국가형벌제도의 반동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고구려시기 적용된 형벌에는 또한 귀양 형이 있었다.

귀양형은 《범죄자》를 먼곳으로 추방시키는 형벌로서 대체로 중한 《죄》를 진자들에게 적용되였다. 그것은 《삼국사기》을 파소렬전에서 을파소가 좌가려의 반란을 진압하고 주범인 좌가려에게는 사형을, 공범자들에게는 귀양형*을 적용한 사실에서 찾아볼수 있다. 좌가려의 반란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귀양형을 적용한것을 보면 귀양형이 반역자와 같이 중한 죄를 진자들에게 실시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삼국사기》권45 렬전5 을파소 고구려시기 적용된 형벌에는 또한 곤장 형이 있었다.

곤장형은 몽둥이로 매를 안기는 형벌로 서 고구려에서 비교적 경한 죄를 진자들 에게 적용되였다.

고구려의 을불(후에 미천왕)이 피신생활을 하던중 소금장사를 하다가 하루밤 묵은 로파에게서 신발을 감추었다는 허위신고를 당했을 때 압록재(고을원)가 을불에게 신발값을 물어주게 하고 곤장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삼국시기 작은 범죄에 대해서는 곤장형, 육체형이 널리 실시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일반범죄행위

에 곤장형을 적용한것을 보면 봉건통치배들이 피지배계급인민들을 대상으로 곤장형을 고안해내고 인민들을 지배하기 위한육체형으로 많이 적용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삼국사기》권19 고구려본기 미천왕 즉위년

고구려시기 적용된 형벌에는 또한 위노 가 있었다.

위노(노비화)는 《죄인》의 신분을 떨구어 노비로 만드는 형벌이였다. 이 형벌의 적 용대상은 노비를 제외한 사람들이였다. 왜 냐하면 노비를 노비로 만든다는것은 법적 징계로 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고구려에서 위노형은 《범죄자》에게 독 자적인 형벌로 적용될 때에는 기본형벌로, 《죄》를 진 사람의 가족에게 적용될 때에 는 련좌형으로 실시되였다.

위노형이 기본형벌로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은 주로 평민(평인, 민, 서인) 이였다.

고구려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사유재산을 옹호하며 노비원천을 확보하기 위하여소와 말을 훔친자 그리고 《도적질》한자가 10~12배의 배상을 물지 못하는 경우 노비로 만들도록 하였다.

착취사회에서 《도적질》이란 많은 경우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도란에 빠진 인 민들이 부자들과 관청관리들에게 빼앗겼 던 물건을 되찾아내는 투쟁의 한 형태였 고 소와 말을 죽인것도 그러한 투쟁의 하 나로서 10~12배의 배상을 물린다거나 노 비로 삼는다는것은 참으로 가혹한 형벌이 였다. 이것은 고구려통치계급이 저들의 사 유재산을 옹호하며 노비의 원천을 확보하 기 위하여 가혹한 형벌을 제정하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심히 억제하였다는것을 보 여주고있다.

위노형은 봉건지배계급에게도 많이 적 용되였는데 그런 경우 이 형벌은 《죄인》 의 가족들에게 련좌형으로 실시되였다.

특히 봉건지배계급내부에서 왕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거나 나라를 반대하여 다른 나라에 가붙은자의 가족은 모두 노비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것은 위노형이 봉건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징계수단으로 실시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구당서》권199 고려전,《주서》권49 이역전

가산몰수는 《범죄자》의 집과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이였다. 이 형벌은 주로 사형과 같은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의 부가형으로 적용되였다. 이 경우 《범죄자》의 재산전부를 몰수하였다.

이상에서 본 형벌외에도 고구려에서는 평민으로 만드는 위서(인), 죄인을 먼곳으로 보내는 추방, 《죄》를 범한 관리들의 관 직을 박탈하는 관직박탈, 물건을 도적질한 자에게 몇배의 물건을 물게 하는 배상 등 많은 형벌들이 실시되였다.*

*《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13년 4월,《주서》권49 이역전 고구려전,《구당서》권199 고려전,《삼국지》위서 렬전 고구려전

고구려의 형벌제도는 봉건왕권과 통치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 하였다. 그것은 고구려의 봉건통치배들이 성립초기부터 가장 엄중한 《범죄》라고 인 정하는 행위를 《10악》으로 제정하여놓고 형벌제도를 가혹하게 실시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악》은 봉건사회 에서 용서받을수 없는 10가지 《범죄행위》 를 의미하였는데 그것을 보면 ①모반(謀反) -국가주권을 반대한자, ②모대역(謀大逆) -종묘, 왕의 무덤, 궁궐을 침해하는자, ③ 모반(謀叛)-나라를 배반하고 외국과 통하 는자, ④악역(惡逆)-자기 또는 남편의 부 모, 조부모, 숙부, 숙모, 남편 등을 죽이는 자, ⑤부도(不道) - 한집에서 3명을 죽이거 나 죽일것을 계획하는자, ⑥대불경(大不敬) - 왕실물자를 도적질하거나 왕의 생명을 위 태롭게 할수 있는 우려가 있는짓을 하는 자, ⑦불효(不孝)-자기 또는 남편의 직계 족속에 대하여 욕질하거나 조부모 또는 부 모의 상을 치루는 기간안에 결혼하거나 상 복을 입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부모 또는 부 모가 사망하였다고 하는것, ⑧불목(不睦) -친척을 죽이거나 노비로 팔며 또는 남 편과 웃사람을 때리거나 고발하는자, ⑨불 의(不義)-자기 고을의 장관과 군대의 상 관 및 5품이상의 관리를 죽이거나 죽은 남 편을 위하여 상복을 입지 않는것 또는 다 른 남자에게 재가하는것, ⑩내란(內亂)-근친간의 간통* 등 왕권을 옹호하고 봉건 통치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 관되여있다. 이것은 고구려형벌제도의 반 동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증보문헌비고》권127 형고 고구려의 형벌제도는 일련의 특징을 가 지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기본형벌과 부가형벌이 구분되여 실시되면서도 많은 경우 한데 어 울려 적용된것이다.

고구려에서 참형과 교형, 귀양형, 곤장형 등은 《범죄》행위의 내용과 경중의 차이에 따라 독자적으로 적용되였다. 하지만 가산몰수, 화형, 위노, 배상 등은 그자체가해당 위법행위의 제재수단, 징벌수단으로되여있지 못하고 주로 엄중성정도에 따라기본형벌에 덧붙는 형식으로 실시되였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형벌들이 한데 어울려 적용되였다. 즉 사형에는 가산몰수, 위노, 화형 등이 덧붙는것을 들수 있다. 위노는 기본형으로도 쓰이고 부가형으로도 쓰이였으며 곤장형에는 기본상 부가형이 덧붙지 않았다. 그것은 곤장형이 고구려에서비교적 경한 형벌이였기때문이라고 생각되다.

그것은 둘째로, 전시기에 비해볼 때 형 벌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진것이다. 고구려전시기의 형벌제도를 보면 대체로 매 형벌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여있었다. B. C. 30세기초에 우리 나라에서 첫 노예소유자국가로 고조선이 성립되였는데 형벌제도는 《범금8조》에 일정하게 반영되여 있다. 《범금8조》의 8개 조항가운데서 오늘까지 전해오는것은 《살인》, 《상해》, 《도적》에 해당한 형벌(사형, 보상, 위노)을 규정한 3개 조항뿐이다.*1 부여의 형벌제도도 전해지고있는데 그것을 보면 《살인》, 《도적》등에 대한 형벌(사형, 위노, 배상)들만이 규정되여있다.*2 이것은 노예소유

자사회에서 매 형벌의 적용범위가 극히 제

한되여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3

*1, 2 《한서》 권28 하 지리지 연지, 《삼 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부여 *3 현재 전해지고있는 법조항들의 전반 적인 내용으로 보아 노예소유자사회에 서는 봉건사회에서보다 형벌의 적용범 위가 그리 넓지 않았던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고구려시기에 들어와 매 형벌의 적용범위는 상당히 넓어졌다. 실례로 사형 적용대상의 범위를 보면 왕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거나 도모한자,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에 가붙은자,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자, 전투에서 패배한자, 적에게 투항한자, 사람을 죽인자 등 많은 《범죄행위》에 적용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봉건통치배들이 봉건통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법조항을 만들어내고 형벌제도를 반동적으로 실시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셋째로, 사형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용되고 가혹하게 실시되였다는것이다. 고구려에서는 여러가지 사형방법들이 실시되었는데 그것을 보면 참형, 교형, 화형, 자살형 등이였다. 물론 고구려이후시기의나라들에서 많은 사형방법들이 실시되였지만 고구려전시기나 고구려와 같은 시기에 존재한 나라들에 비해볼 때 고구려에서 적지 않은 사형방법들이 실시되였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사형은 매우 가혹한 방법으로 적용되였다. 특히 사람의 몸을 불로 지지 거나 태운 다음 참형을 적용한것은 중세봉 건국가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고 구려의 통치자들이 봉건통치제도를 유지강 화하기 위하여 형벌제도를 매우 가혹하게 실시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형벌제도는 사형을 최고형벌로 하고 여기에 많은 형벌들이 적

용되였으며 그 실시에서도 여러가지 방법들이 적용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형벌제도는 철저히 왕권과 봉건통치제도를 유지강화하고 인민들을 지배하고 예속하기 위한 폭력수단으로 복무하였다.

우리는 착취사회 형벌제도의 반동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하 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